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높은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아이엠에셋자산운용**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iM에셋 타이거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iM에셋 타이거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iM에셋 타이거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펀드코드 : EN723)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아이엠에셋자산운용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im-fund.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6년 10월 01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년 10월 22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투자신탁은 2025년 10월 03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02-707-4200, www.im-fund.com),
한국금융투자협회(02-2003-9000, www.kofia.or.kr), 각 판매회사 본, 지점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이 투자신탁이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레버리지 전략(적은 금액으로 투자금액 이상의 높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분산투자 규제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운용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이 집합투자기구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상장주식 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하게 되므로 주식의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에서 적용되는 공시 의무 등이 법령상 배제되어 운용과 관련된 정보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물론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일반적인 재간접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투자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11. 이 투자신탁이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운용보수 이외에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징수되는 성과보수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의 예상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이 실현될 수 있으며, 성과보수를 채택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것 보다 실현되는 수익률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1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공정가치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자산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산정한 공정가치가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매일 기준가격이 산정되지 않고 매주1회 또는 매월 1회 산정될 수 있는 등 기준가격 산정주기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 대상자산의 가치가 적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일반 사모집합투자

기구의 기준가격은 불완전한 상태로 산정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도 불완전한 상태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환매청구 시점, 기준가격 적용일 및 환매대금 지급일 간의 기간이 오랜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매청구 시점 대비하여 환매대금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

13. 이 투자신탁이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 대상 자산의 유동성 제약 등을 이유로 환매청구 시점부터 환매대금 지급일까지의 환매주기가 오랜 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의 환매주기도 일반적인 투자신탁보다 길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간 내에 투자자금을 유동화하기 원하는 고객이나, 오랜 환매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가치변동 위험을 원치 않는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기 원하는 고객께서는 장기간의 환매주기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지 고려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 이 투자신탁은 환매대금 지급일이 일반적인 투자신탁보다 길게 설계되어 있어 투자자의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기 원하는 고객께서는 투자자금 회수 시의 환금성 제약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지 고려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해당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전이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 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투자신탁에 전이될 위험이 높습니다.

16.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

투자업자가 운용하는 "iM에셋 내일출금 초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을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한 후 모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으로 전환되는 조치를 취하므로 신중한 검토 후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 약 정 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6.10.01)

iM에셋 타이거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펀드코드: EN723]

투자위험등급 : 1등급[매우높은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아이엠에셋자산운용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50% 초과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 **원본손실위험, 유동성 위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투자위험, 재간접 투자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iM에셋 타이거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7 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초과하여 투자하며,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전략에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50% 초과하여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분산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 투자대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 개요 및 구체적인 투자전략은 투자설명서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0%이내	0.970	0.450	0.81	1.136	215	335	459	722	1,47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1.470	0.950	1.18	1.636	168	341	520	896	1,951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0%이내	0.740	0.220	0.54	0.906	142	239	339	551	1,163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0.990	0.470	0.73	1.156	118	242	369	639	1,410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보수·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5) 합성 총보수·비용은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된 보수와 기타비용에 투자비율에 따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추정치(기타비용 제외)는 약 0.166%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클래스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5.10.02 ~ 26.10.01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2025-10-29	-	-	-	-	46.98
비교지수(%)	2025-10-29	-	-	-	-	-
수익률 변동성(%)	2025-10-29	-	-	-	-	43.52

주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수익률 (사모투자재간접형, 단위:%)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강성호	1972	책임(이사대우)	19개	5,768억원	-	-	-	-	22.5년
차영민	1991	부책임(책임)	16개	2,257억원	-	-	-	-	1.3년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글로벌솔루션팀에서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 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주요투자
위험</td><td>
<table>
<tr><th>구 분</th><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tr>
<tr><td>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td></tr>
</table>
</td></tr>
<tr><td>주요투자
위험</td><td>
<table>
<tr><th>구 분</th><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tr>
<tr><td>일반 사모집합
투자기구
기준가격
관련 위험</td><td>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시장 가격이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집합투자업자가 공정가치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자산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산정한 공정가치가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환매청구 시점 기준가격 적용일 및 환매대금 지급일 간의 기간이 오랜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매 청구 시점 대비하여 환매대금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td></tr>
<tr><td>일반 사모집합
투자기구
운용관련
위험</td><td>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레버리지전략(적은 금액으로 투자금액 이상의 높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분산투자 규제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운용규제를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 배제되는 주요 운용규제>
- 동일종목 증권 투자제한(10%)
- 동일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 투자제한(50%)
- 동일 집합투자증권 투자제한(20%)(ETF의 경우 30%)
- 각 집합투자기구에 편입하는 동일 집합투자증권 총수 제한(20%)</td></tr>
<tr><td>일반 사모집합
투자기구
정보접근
제약 위험</td><td>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시 의무를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상품 및 운용과 관련된 정보접근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한된 정보접근에 따라 투자의사결정시 제약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td></tr>
<tr><td>성과보수
적용펀드
투자위험</td><td>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징수되는 성과보수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의 예상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이 실현될 수 있으며 성과보수를 채택하지 않은 집합투자 기구에 투자하는 것보다 실현되는 수익률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td></tr>
<tr><td>환매주기
관련 위험</td><td>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자산의 유동성 제약 등을 이유로 환매 청구 시점부터 환매대금 지급일까지의 환매주기가 오랜 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의 환매주기도 일반적인 투자신탁보다 길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간 내에 투자자금을 유동화하기 원하는 고객이나, 오랜 환매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가치변동 위험을 원치 않는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기 원하는 고객께서는 장기간의 환매주기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지 고려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투자신탁
해지 위험</td><td>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td></tr>
</table>
※ 자세한 투자위험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d></tr>
<tr><td>매입
방법</td><td>·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td><td>환매
방법</td><td>·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13영업일(D+1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14영업일(D+1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14영업일(D+13)에</td></tr>
</table>

<table>
<tr><td>환매
수수료</td><td>해당사항 없음</td><td></td><td>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15영업일(D+14)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td></tr>
<tr><td>기준가</td><td colspan="3"><table>
<tr><td>산정방법</td><td>-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td></tr>
<tr><td>공시장소</td><td>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im-fund.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td></tr>
</table></td></tr>
<tr><td>과세</td><td colspan="3"><table>
<tr><th>구분</th><th>과세의 주요내용</th></tr>
<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
</table>※세제혜택 및 과세에 대한 세부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 colspan="3">해당사항 없음</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 colspan="3">㈜아이엠에셋자산운용 대표번호 : 02-707-42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im-fund.com</td></tr>
<tr><td>모집기간</td><td>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td><td>모집・매출
총액</td><td>10조좌</td></tr>
<tr><td>효력발생일</td><td>2026년 10월 22일</td><td>존속기간</td><td>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www.im-fund.com)/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td></tr>
<tr><td>참조</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
	수수료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F)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또는 기금, 보험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계정 및 이를 수익자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전용 집합투자증권, 일정금액 이상 납입한 투자자 등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im-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홈페이지(www.im-fund.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im-fund.com)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iM에셋 타이거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EN723**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EN724
수수료선취-온라인(Ae)	EN72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EN726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EN72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EN7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EN729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EN730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사모투자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 종류형 :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 사모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 :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 해당 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최초설정일 기준 1좌당 1원) 단위로 모집합니다.

주1) 모집(판매) 기간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 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 되거나 해지 될 수 있습니다.

주3) 모집(판매) 예정금액 또는 예정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이 투자신탁은 2025년 10월 03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추가형으로 모집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im-fund.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iM에셋 타이거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EN723**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EN724
수수료선취-온라인(Ae)	EN72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EN726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EN72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EN7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EN729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EN730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25.10.29	최초 설정
2026.10.2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황지혜→차영민) 재무제표(반기)에 따른 내용 갱신 채권평가회사 변경사항 반영((주)에프앤자산평가→이지자산평가(주))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 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아이엠에셋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교보증권빌딩 14층 02-707-4200, www.im-fund.com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기준일: 2026.10.01 현재)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경력년수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책임	강성호	1972년	이사대우	22.5년	아이엠에셋자산운용 글로벌솔루션팀(19.12.~현재) 제이앤투자자문 전략총괄(17.06.~19.12) KB자산운용 해외채권팀(11.12.~16.09) 국민연금공단 해외증권실(09.10.~11.12) 삼성자산운용 해외증권팀(05.05.~09.10) 맥쿼리자산운용 전략운용본부(03.05~05.03)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 운용규모 -개 / -억원
부책임	차영민	1991년	책임	1.3년	아이엠에셋자산운용 글로벌솔루션팀(22.03~현재) 마이퍼스트에셋자산운용 자산운용팀(21.06~22.03) 화인파트너스 기획/리스크관리부(20.02~21.06)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 운용규모 -개 / -억원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성명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사모투자재간접형) (%)			
			운용역		운용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강성호	19개	5,768억원	-	-	-	-
차영민	16개	2,257억원	-	-	-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글로벌솔루션팀에서 담당합니다. 상기인은 "책임운용전문인력"으로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한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투자신탁의 명칭, 투자신탁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 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참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2025.08.31 기준)

구분	성명	생년(년)	직위	운용현황		운용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책임	김영준	1978년	이사	87개	19,046억원	15.3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2015.07 ~ 현재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운용 이사 2011.07 ~ 2015.06 마스터투자자문 주식운용 2009.11 ~ 2011.02 이룸투자자문 주식운용 학력: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졸업						

구분	성명	생년(년)	직위	운용현황		운용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부책임	이재완	1980년	대표이사	87개	19,046억원	17.2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2013.12 ~ 현재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운용 대표이사

2009.04 ~ 2013.11 에셋디자인투자자문 대표이사

2008.04 ~ 2009.01 리딩투자증권 PI 운용

학력: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구분	성명	생년(년)	직위	운용현황		운용경력 년수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부책임	조환호	1981년	이사	87개	19,046억원	13.2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2014.12 ~ 현재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메자닌 운용

2014.03 ~ 2014.06 밸류온 애널리스트

2011.11 ~ 2014.02 유화증권 PB

학력: 단국대학교 화학공학과/경영학과 졸업

구분	성명	생년(년)	직위	운용현황		운용경력 년수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부책임	남태한	1982년	위원	87개	19,046억원	15.7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2019.09 ~ 현재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운용

2009.09 ~ 2019.09 아크임팩트자산운용 주식운용

학력: 한동대학교 경영학과/심리학과 졸업

구분	성명	생년(년)	직위	운용현황		운용경력 년수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부책임	김권	1980년	이사	87개	19,046억원	13.6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2014.02 ~ 현재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운용

2009.12 ~ 2013.12 에셋디자인투자자문 리서치

2008.01 ~ 2009.01 진주상호저축은행 주식운용

학력: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구분	성명	생년(년)	직위	운용현황		운용경력 년수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부책임	김기범	1986년	매니저	87개	19,046억원	6.5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2023.11 ~ 현재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운용

2019.03 ~ 2020.03 IBK투자증권 주식운용

2017.04 ~ 2017.11 한가람투자자문 주식운용

2016.04 ~ 2017.04 그린투자자문 리서치

2015.06 ~ 2015.12 타이거자산운용 리서치

2012.07 ~ 2014.02　다원자산운용 리서치 학력: 단국대학교 화학공학과/경영학과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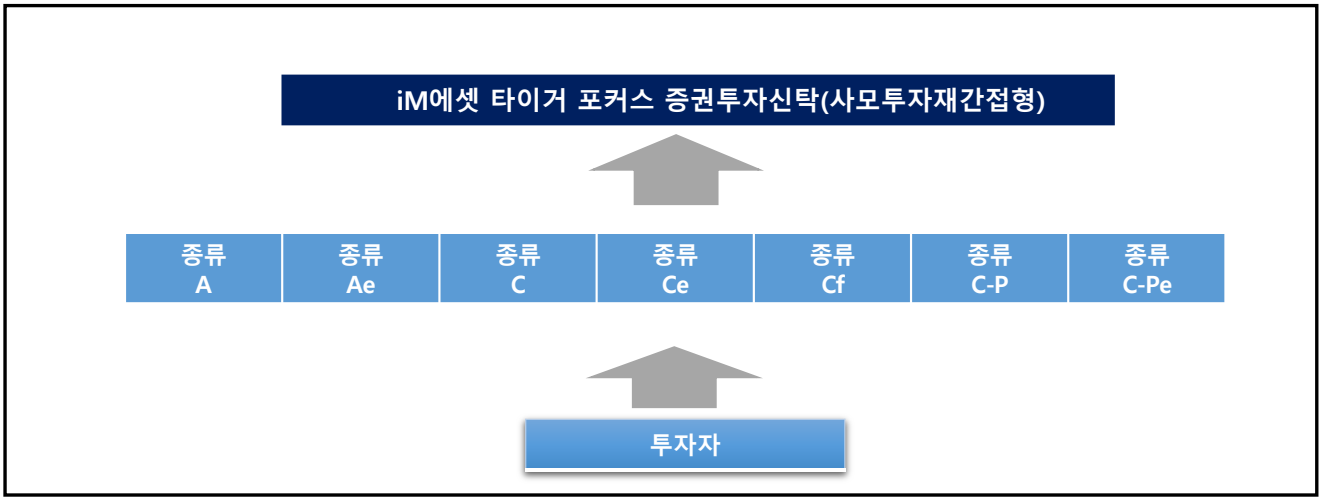
다.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 기간
-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황지혜	2025.10.29 ~ 2026.10.21
차영민	2026.10.22 ~ 현재

주 1) 2026 년 10 월 기준 최근 3 년간의 책임운용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

		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F)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또는 기금, 보험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계정 및 이를 수익자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전용 집합투자증권, 일정금액 이상 납입한 투자자 등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1) 기타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내가. (2)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7 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투자 필요성 및 선정기준

-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외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전략에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합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분산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분산투자 효과를 위해 자산배분 기준에 따라 전략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사모펀드별 주식 노출도와 섹터 비중을 분석하여 전략의 집중도 및 편입 펀드간의 분산도를 점검하며, 국내와 해외의 투자비중 관리와 기대 수익률 범위 내에서 펀드간 리밸런싱을 통해 운용성과 등 정량적 분석을 합니다. 운용성과 외에 운용철학, 운용인력, 운용 프로세스 등 정성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통합하여 선정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내용
①	집합투자증권	50% 초과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다만,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초과로 합니다.
②	주식	50%미만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1호의 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하며, 증권예탁증권의 경우 지분증권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
③	채권	50%미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취득시 신용평가등급 A2- 이상이어야 한다)
④	어음	50%미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이어야 한다) 및 양도성 예금증서
⑤	파생상품	10%이하 (위험평가액 기준)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⑥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⑦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⑧	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⑨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투자대상 ① 내지 ④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

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 투자대상 ⑤ 내지 ⑧ 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까지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강화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경우 : 6개월
2.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의 경우 :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이 제2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처분이 가능한 시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집합투자규약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증권의 대여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의 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의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 증권의 차입 : 효율적 운용, 보유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의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① 이해관계인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	

의 거래	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법시행령 제80조제3항에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다만, 다음의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	

	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③ 집합투자증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는 같은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이내에서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 조 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관련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④ 지분증권총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⑤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⑥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⑦계열회사 발행 증권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⑧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법 제 9 조제 19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행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 투자제한 ②~⑤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상기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까지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강화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경우 : 6개월
2.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의 경우 :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이 제2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처분이 가능한 시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 집합투자규약 제17조제2호 본문, 제3호 가목 및 나목,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 및 법 제229조제1호의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투자신탁에 전이될 위험이 높습니다.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투자전략, 기준가 산정방법 등에 관한 내용은 "제2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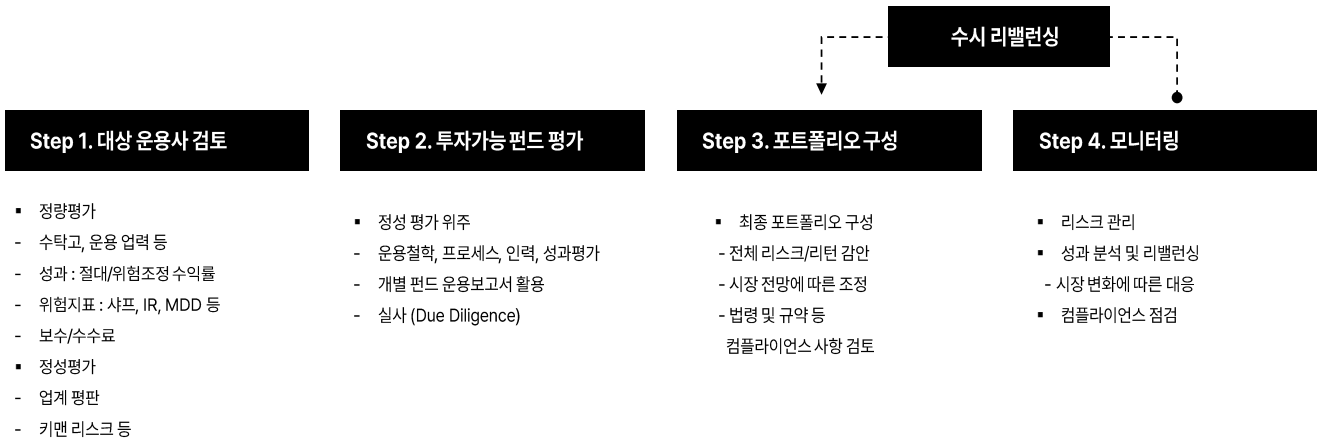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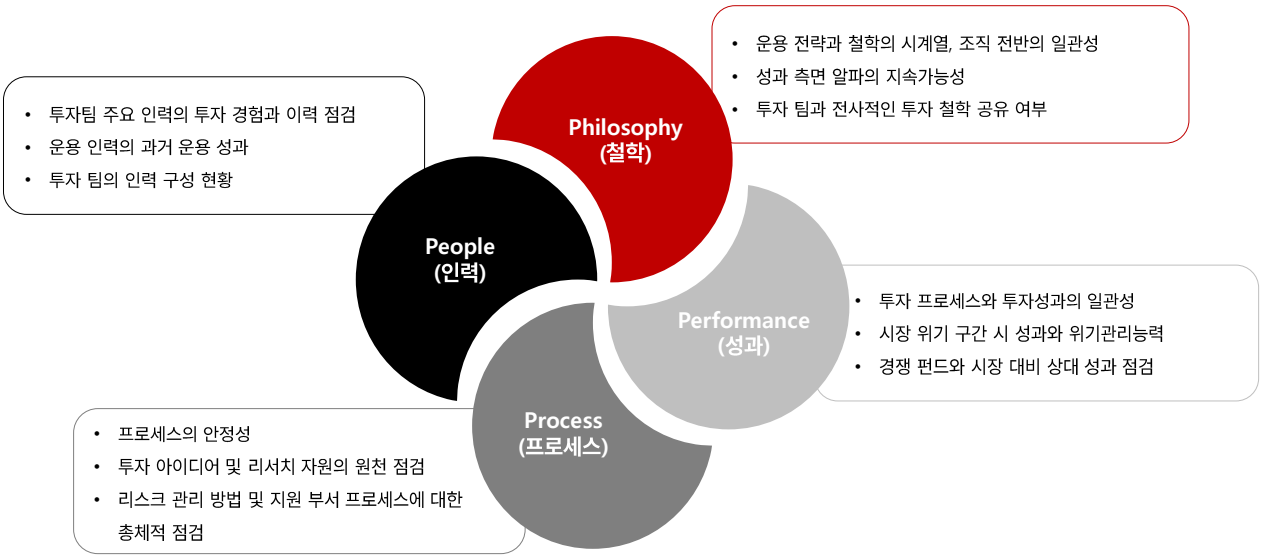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은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초과하여 투자하며,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전략에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50% 초과하여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분산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 투자 프로세스



▣ 투자대상 사모 운용사 및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선정 및 관리

▪ 운용성과 외에 운용철학(Philosophy), 운용인력(People), 운용 프로세스(Process) 등 정성적 요인을 고려하여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통합하여 선정



■ 피투자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인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

구분	주기	내용
제공받는 정보	일간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초 정보(기준가격, 총발행좌수 등)
	월간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보고서(포트폴리오 현황, 운용 계획 등)
	분기	이 투자신탁의 운용보고서 작성 정보(자산현황, 투자자산 매매내역 등)
	수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신탁재산 명세부, 매매현황 등
요청 권한	분기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컴플라이언스 준수사항 점검
	수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점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한사항 점검 등

.

(2) 피투자펀드의 펀드 개요 및 투자전략

▣ 피투자펀드의 펀드 개요

1. 타이거 SIGNATURE 3 일반 사모투자신탁

구분	내용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혼합자산파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사모형
설정일	2021-06-29
투자신탁 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환매 등의 사유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다고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임의해지 할 수 있습니다.
회계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1년간
회계감사	연1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영 제2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table>
<tr><td>투자신탁 보수 등</td><td>- 환매수수료 : 180일 미만 : 이익금의 30%(종류 C-F, C-S 수익증권 제외)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5">보수(연간, 순자산기준)</td></tr>
<tr><td>총보수</td><td>판매회사</td><td>집합투자업자</td><td>신탁업자</td><td>사무관리회사</td></tr>
<tr><td>종류C-F</td><td>0.16%</td><td>0.03%</td><td>0.00%</td><td>0.10%</td><td>0.03%</td></tr>
</table>
- 성과보수
1. 환매 또는 결산시(매년) 운용성과의 20%를 성과보수로 취함
2. 산식 : Max [초과수익금액 X 성과보수율(20%), 0], High Water Mark 방식
* High Water Mark : 성과보수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투자자가 과거에 경험한 가장 높은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성과보수는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최고수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td></tr>
<tr><td>신탁업자</td><td>NH투자증권</td></tr>
<tr><td>사무관리회사</td><td>한국펀드파트너스</td></tr>
</table>

2. 타이거 CORE 3 일반 사모투자신탁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종류 및 형태</td><td>투자신탁, 혼합자산파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사모형</td></tr>
<tr><td>설정일</td><td>2021-06-30</td></tr>
<tr><td>투자신탁 계약기간</td><td>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td></tr>
<tr><td>회계기간</td><td>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1년간</td></tr>
<tr><td>회계감사</td><td>연1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영 제2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td></tr>
<tr><td>투자신탁 보수 등</td><td>- 환매수수료 : 180일 미만 : 이익금의 30%(종류 C-F, C-S 수익증권 면제)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5">보수(연간, 순자산기준)</td></tr>
<tr><td>총보수</td><td>판매회사</td><td>집합투자업자</td><td>신탁업자</td><td>사무관리회사</td></tr>
<tr><td>종류C-F</td><td>0.13%</td><td>0.03%</td><td>0.00%</td><td>0.07%</td><td>0.03%</td></tr>
</table>
- 성과보수
1. 환매 또는 결산시(매년) 운용성과의 20%를 성과보수로 취함
2. 산식 : Max [초과수익금액 X 성과보수율(20%), 0], High Water Mark 방식
* High Water Mark : 성과보수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투자자가 과거에 경험한 가장 높은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성과보수는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최고수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td></tr>
<tr><td>신탁업자</td><td>NH투자증권</td></tr>
<tr><td>사무관리회사</td><td>한국펀드파트너스</td></tr>
</table>

3. 타이거 프라임 3 일반 사모투자신탁

구분	내용

<table>
<tr><td>종류 및 형태</td><td>투자신탁, 혼합자산파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사모형</td></tr>
<tr><td>설정일</td><td>2021-08-03</td></tr>
<tr><td>투자신탁 계약기간</td><td>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td></tr>
<tr><td>회계기간</td><td>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1년간</td></tr>
<tr><td>회계감사</td><td>연1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영 제2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td></tr>
<tr><td>투자신탁 보수 등</td><td>- 환매수수료 : 180일 미만 : 이익금의 30%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5">보수(연간, 순자산기준)</td></tr>
<tr><td>총보수</td><td>판매회사</td><td>집합투자업자</td><td>신탁업자</td><td>사무관리회사</td></tr>
<tr><td>종류C-F</td><td>0.16%</td><td>0.03%</td><td>0.00%</td><td>0.10%</td><td>0.03%</td></tr>
</table></td></tr>
<tr><td>투자신탁 보수 등</td><td>- 성과보수
1. 환매 또는 결산시(매년) 운용성과의 20%를 성과보수로 취함
2. 산식 : Max [초과수익금액 X 성과보수율(20%), 0], High Water Mark 방식
* High Water Mark : 성과보수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투자자가 과거에 경험한 가장 높은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성과보수는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최고수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td></tr>
<tr><td>신탁업자</td><td>NH투자증권</td></tr>
<tr><td>사무관리회사</td><td>한국펀드파트너스</td></tr>
</table>

4. 타이거 ORIGIN 3 일반 사모투자신탁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종류 및 형태</td><td>투자신탁, 혼합자산파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사모형</td></tr>
<tr><td>설정일</td><td>2021-08-26</td></tr>
<tr><td>투자신탁 계약기간</td><td>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환매 등의 사유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다고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임의해지 할 수 있습니다.</td></tr>
<tr><td>회계기간</td><td>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1년간</td></tr>
<tr><td>회계감사</td><td>연1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영 제2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td></tr>
<tr><td>투자신탁 보수 등</td><td>- 환매수수료 : 180일 미만 : 이익금의 30%(종류 C-F, C-S 수익증권 면제)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5">보수(연간, 순자산기준)</td></tr>
<tr><td>총보수</td><td>판매회사</td><td>집합투자업자</td><td>신탁업자</td><td>사무관리회사</td></tr>
<tr><td>종류C-F</td><td>0.13%</td><td>0.03%</td><td>0.00%</td><td>0.07%</td><td>0.03%</td></tr>
</table>
- 성과보수</td></tr>
</table>

	1. 환매 또는 결산시(매년) 운용성과의 20%를 성과보수로 취함 2. 산식 : Max [초과수익금액 X 성과보수율(20%), 0], High Water Mark 방식 * High Water Mark : 성과보수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투자자가 과거에 경험한 가장 높은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성과보수는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최고수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집합투자업자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신탁업자	NH투자증권
사무관리회사	한국펀드파트너스

5. 타이거 The Max 3 일반 사모투자신탁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종류 및 형태</td><td>투자신탁, 혼합자산파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사모형</td></tr>
<tr><td>설정일</td><td>2023-09-05</td></tr>
<tr><td>투자신탁 계약기간</td><td>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td></tr>
<tr><td>회계기간</td><td>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1년간</td></tr>
<tr><td>회계감사</td><td>연1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영 제2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td></tr>
<tr><td>투자신탁 보수 등</td><td>- 환매수수료 : 36개월(3년) 미만 : 이익금의 70%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5">보수(연간, 순자산기준)</th></tr>
<tr><th>총보수</th><th>판매회사</th><th>집합투자업자</th><th>신탁업자</th><th>사무관리회사</th></tr>
<tr><td>종류C-S</td><td>0.11%</td><td>0.01%</td><td>0.00%</td><td>0.07%</td><td>0.03%</td></tr>
</table>
- 성과보수
1. 환매 또는 결산시(매년) 운용성과의 10%를 성과보수로 취함
2. 산식 : Max [초과수익금액 X 성과보수율(10%), 0], High Water Mark 방식
* High Water Mark : 성과보수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투자자가 과거에 경험한 가장 높은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성과보수는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최고수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td></tr>
<tr><td>신탁업자</td><td>NH투자증권</td></tr>
<tr><td>사무관리회사</td><td>한국펀드파트너스</td></tr>
</table>

6. 타이거 매직 506 일반사모투자신탁

구분	내용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혼합자산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사모형
설정일	2025-05-23
투자신탁 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회계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1년간

<table>
<tr><td>회계감사</td><td>연1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영 제2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td></tr>
<tr><td>투자신탁 보수 등</td><td>-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5">보수(연간, 순자산기준)</td></tr>
<tr><td>총보수</td><td>판매회사</td><td>집합투자업자</td><td>신탁업자</td><td>사무관리회사</td></tr>
<tr><td>종류C-F</td><td>0.20%</td><td>0.10%</td><td>0.00%</td><td>0.07%</td><td>0.03%</td></tr>
</table>
- 성과보수
1. 환매 또는 결산시(매년) 운용성과의 20%를 성과보수로 취함
2. 산식 : Max [초과수익금액 X 성과보수율(20%), 0], High Water Mark 방식
* High Water Mark : 성과보수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투자자가 과거에 경험한 가장 높은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성과보수는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최고수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td></tr>
<tr><td>신탁업자</td><td>신한투자증권</td></tr>
<tr><td>사무관리회사</td><td>한국펀드파트너스</td></tr>
</table>

7. 타이거 하모니 545 일반사모투자신탁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종류 및 형태</td><td>투자신탁, 혼합자산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사모형</td></tr>
<tr><td>설정일</td><td>2025-07-16</td></tr>
<tr><td>투자신탁 계약기간</td><td>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td></tr>
<tr><td>회계기간</td><td>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1년간</td></tr>
<tr><td>회계감사</td><td>연1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영 제2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td></tr>
<tr><td>투자신탁 보수 등</td><td>-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5">보수(연간, 순자산기준)</td></tr>
<tr><td>총보수</td><td>판매회사</td><td>집합투자업자</td><td>신탁업자</td><td>사무관리회사</td></tr>
<tr><td>종류C-F</td><td>0.13%</td><td>0.03%</td><td>0.00%</td><td>0.07%</td><td>0.03%</td></tr>
</table>
- 성과보수
1. 환매 또는 결산시(매년) 운용성과의 20%를 성과보수로 취함
2. 산식 : Max [초과수익금액 X 성과보수율(20%), 0], High Water Mark 방식
* High Water Mark : 성과보수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투자자가 과거에 경험한 가장 높은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성과보수는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최고수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td></tr>
<tr><td>신탁업자</td><td>KB증권</td></tr>
<tr><td>사무관리회사</td><td>한국펀드파트너스</td></tr>
</table>

8. iM에셋 공모주플러스 증권투자신탁 1호(채권혼합)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종류 및 형태</td><td>투자신탁, 혼합채권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공모형</td></tr>
<tr><td>설정일</td><td>2015-03-06</td></tr>
<tr><td>투자신탁 계약기간</td><td>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td></tr>
<tr><td>회계기간</td><td>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1년간</td></tr>
<tr><td>회계감사</td><td>연1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td></tr>
<tr><td>투자신탁 보수 등</td><td>-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5">보수(연간, 순자산기준)</th></tr>
<tr><th>총보수</th><th>판매회사</th><th>집합투자업자</th><th>신탁업자</th><th>사무관리회사</th></tr>
<tr><td>종류C-F</td><td>0.545%</td><td>0.02%</td><td>0.49%</td><td>0.02%</td><td>0.015%</td></tr>
</table></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아이엠에셋자산운용</td></tr>
<tr><td>신탁업자</td><td>하나은행</td></tr>
<tr><td>사무관리회사</td><td>신한펀드파트너스</td></tr>
</table>

9. iM에셋 ALL바른 ESG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종류 및 형태</td><td>투자신탁, 채권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공모형</td></tr>
<tr><td>설정일</td><td>2021-12-29</td></tr>
<tr><td>투자신탁 계약기간</td><td>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td></tr>
<tr><td>회계기간</td><td>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1년간</td></tr>
<tr><td>회계감사</td><td>연1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td></tr>
<tr><td>투자신탁 보수 등</td><td>-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5">보수(연간, 순자산기준)</th></tr>
<tr><th>총보수</th><th>판매회사</th><th>집합투자업자</th><th>신탁업자</th><th>사무관리회사</th></tr>
<tr><td>종류C-F</td><td>0.115%</td><td>0.01%</td><td>0.08%</td><td>0.015%</td><td>0.01%</td></tr>
</table></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아이엠에셋자산운용</td></tr>
<tr><td>신탁업자</td><td>우리은행</td></tr>
<tr><td>사무관리회사</td><td>신한펀드파트너스</td></tr>
</table>

▣ 피투자펀드의 종류와 특성

(기준 : 2025-08-31)

펀드명	주된 투자대상	펀드종류	운용규모	투자비중 (예시)	운용회사

타이거 SIGNATURE 3 일반 사모투자신탁	국내외 상장주식, 채권 등	혼합자산파생형	211억원	13% 수준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타이거 CORE 3 일반 사모투자신탁	국내외 상장주식, 상장사 메자닌 등	혼합자산파생형	920억원	15% 수준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타이거 프라임 3 일반 사모투자신탁	국내외 상장주식, 채무증권 등	혼합자산파생형	528억원	14% 수준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타이거 ORIGIN 3 일반 사모투자신탁	국내외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상장사 메자닌 등	혼합자산파생형	276억원	11% 수준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타이거 The Max 3 일반 사모투자신탁	국내외 상장주식, 상장사 메자닌 등	혼합자산파생형	163억원	11% 수준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타이거 하모니 545 일반사모투자신탁	국내외 상장주식, 채권 등	혼합자산형	288억원	12% 수준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타이거 매직 506 일반사모투자신탁	국내외 상장주식, 상장사 메자닌 등	혼합자산형	528억원	14% 수준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iM에셋 공모주플러스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채권, 공모주	혼합채권형	1,133억원	15%이하	아이엠에셋자산운용
iM에셋 ALL바른 ESG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채권	채권형	655억원		아이엠에셋자산운용

※ 각 피투자펀드의 최대편입한도는 20%이며, 일반 사모집합투자구의 편입은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이 운용하는 사모펀드만을 편입할 예정입니다.

※ 상기 예상 편입비중은 작성시점(2025.08.31 기준)에 예상되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전체 편입금액 대비 각 피투자펀드 편입 금액 비율이며, 향후 시장상황 및 유동성 등에 따라 피투자펀드 및 편입비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피투자펀드의 주요 투자전략

펀드명	투자전략 요약	투자전략 상세	설정일
타이거 SIGNATURE 3 일반사모투자신탁	국내 및 해외(미국,홍콩,일본 한정) 등 Long 중심전략	○ 해외 시장 중 거래 안정성이 높은 3개국(미국,일본,홍콩) 위주 투자 ○ 해외 숏 금지로 롱포지션이 높은 롱바이어스	2021-06-29
타이거 CORE3 일반사모투자신탁	국내외 주식 롱바이어스 + 메자닌	○ 국내주식 0~100% , 해외주식 0~100% 등 국내외 주식 액티브한 비중조절 ○ 메자닌의 리픽싱 전략을 활용해 변동성 축소 ○ 다양한 롱숏 전략 병행해 절대수익 추구 (펀더멘털, 페어트레이딩 등) ○ 주식 순노출도를 시황에 따라 적극적 조절해 시장방어에 초점	2021-06-30
타이거 프라임 3 일반사모투자신탁	주식 롱온리 전략 위주 (해외주식 숏금지 + 메자닌 금지)	○ 해외주식은 적극적 롱전략 한정해 투자 (숏없음), TRS 전략 사용 금지 ○ 150개 내외 종목에 분산투자해 포트폴리오 변동성 축소 추구 ○ 타 펀드에 비해 숏전략 제한으로 비교적 높은 주식 순노출도로 운용	2021-08-03
타이거 ORIGIN 3 일반사모투자신탁	가치투자 기반의 국내외 주식 + 절대수익을 위한 메자닌 + 롱숏	○ 타이거자산운용의 강점인 Bottom Up 위주의 종목선정 + 펀더멘털 롱숏 ○ 150개 내외 종목에 분산투자해 포트폴리오 변동성 축소 추구 ○ 타 펀드에 비해 숏전략 제한으로 비교적 높은 주식 순노출도로 운용	2021-08-26
타이거 The Max 3 일반사모투자신탁	장기투자 + 메자닌 활용 절대수익 - 국내외 주식 Buy & Hold + 메자닌	○ 단기적 시황대응 없이(숏전략 없음) 성장주 장기보유로 보유수익 극대화 추구 ○ 권장 투자기간은 3년 이상 ○ 국내/외 성장주 위주로 압축 투자 ○ 메자닌 투자 병행으로 변동성 축소 효과 추구	2023-09-05
타이거 하모니 545 일반사모투자신탁	국내외 주식 + 채권 7% 이상 투자 (메자닌 등 비시장성 투자 금지)	○ 채권 의무편입을 통해 Carry 수익 확보 + 포트폴리오 변동성 축소 ○ 국내 상장주식 위주로 투자하되, 적극적 트레이딩 병행해 연단위 수익 쌓아가는 전략 추구	2025-07-16
타이거 매직 506 일반사모투자신탁	주식 트레이딩 포커스 전략	○ 국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되 적극적 트레이딩 병행해 연단위 수익 쌓아가는 전략 추구 ○ 다양한 롱숏 전략 병행해 절대수익 추구 (펀더멘털, 페어트레이딩 등)	2025-05-23
M 에셋 공모주플러스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50% 이상 국내 채권과 30% 이하의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자산에 투자	순수 PO 만을 추구하는 '공모주(PO) 투자전략 및 국공채와 우량채권(A-이상) 중심의 채권 투자전략	2015-03-06
펀드명	**투자전략 요약**	**투자전략 상세**	**설정일**
M 에셋 ALL바른 ESG 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50% 이상의 ESG 목적 채권과 ESG 우수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	듀레이션 1년 미만으로 시장위험 노출 최소화, ESG 목적채권 50% 이상 편입, A-이상 우량종목 선별 투자	2021-12-29

※ 투자전략 상세 기재 내용 설명

- 메자닌 리픽싱 전략 : 메자닌 투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에 적용되는 가격 조정(리픽싱, Re-fixing) 조건을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메자닌 상품에서의 리픽싱이란 메자닌 증권의 전환가격(또는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을 일정 조건에 따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주가가 발행 당시 전환가보다 하락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환가격을 낮춰주는 장치입니다.
- 다양한 롱숏 전략 중 페어트레이딩 전략 : 두 종목간의 가격 관계(상대가치)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는 가정하에, 그 관계가 일시적으로 벗어나면 저평가 종목을 매수(Long), 고평가 종목을 매도(Short)하는 전략
- 롱바이어스 전략 :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의 기본적인 운용전략은 bottom-up 방식의 long 전략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short 포지션을 유연하게 활용하며, 시장의 급락 또는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는 long-short의 비중을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대응하다가, 시장이 상승 구간으로 전환할때는 short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long 전략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 상기 피투자펀드의 주요 투자내용은 작성기준일(2025.08.31) 시점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당해 투자신탁이 실제 운용되는 동안 시장상황, 운용규모 및 운용상황 등에 따라 실제 포트폴리오는 달라질 수 있으며 투자대상자산은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요 전략 예시

1. 펀더멘탈 롱숏(Fundamental Long Short)
기업의 펀더멘탈(재무상태, 사업경쟁력, 성장성 등)을 분석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매수하고(롱포지션), 고평가되었거나 전망이 부정적인 종목은 매도하여(숏포지션) 차익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우량 종목의 상승폭을 크게 누릴 수 있고, 하락장에서는 부실 종목의 숏 포지션이 방어 역할을 하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의 흐름이 반대로 움직이거나 시장 전체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에는 롱포지션과 숏포지션 간 차이가 줄어들어 성과가 저하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2. 이벤트 드리븐(Event-Driven)
기업의 인수합병, 구조조정, 배당 확대, 파산 등 특정 사건을 기회로 삼아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시장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이벤트 발생 시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하락 국면에서도 시장과 무관하게 이벤트 성사 여부에 따라 수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이벤트가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에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채권 보유
가용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채, 통안채, 회사채 등에 투자함으로써 채권 보유에 따른 이자수익 및 자본 차익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기대할 수 있으며 금리 하락 국면에서는 보유 채권의 가치가 상승하여 자본 차익을 추가로 기대할 수 있으나, 금리 상승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회사채의 경우 발행 회사의 신용위험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4. 메자닌 투자 전략을 포함한 IB 딜(Deal)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의 메자닌 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상품으로 상승장에서 주가 전환을 통해 추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동시에 하락장에서는 일정 수준의 이자 수익이 방어 역할을 하지만, 발행 기업이 부실하거나 전환 가격(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 주가보다 높을 경우에는 기대 수익이 줄어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5. 공모주 투자
신규 상장 기업의 주식을 공모 가격에 매수하여 상장 후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상승장에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공모가 밑으로 주가가 떨어질 위험이 있으며, 의무보유확약이 있을 경우 매도 시점이 제한되어 단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글로벌 주식 스왑(Global Equity Swap)
해외 주식이나 ETF를 직접 매매하지 않고 전담중개업자 또는 증권사와 계약을 맺어 해당 자산의 손익만 교환하는 방식으로, 복잡한 환전과 결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해외 시장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전략입니

다. 그러나 계약 상대방인 증권사의 신용 위험과 주가 급변 시 추가 증거금 납부로 인한 유동성 위험 등이 존재합니다.

7. ETF와 파생상품을 통한 자산배분(Managed Futures)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선물 또는 옵션 같은 파생상품을 활용해 시장 전체의 방향성에 대한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개별 주식을 직접 사고파는 현물 거래에 비해 효율적으로 순투자비중(Net Exposure)을 관리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상승장에서는 ETF나 선물을 매수해 시장 수익을 빠르게 추종할 수 있고, 하락장에서는 선물을 매도하는 전략으로 손실을 방어할 수 있어 자산 배분과 위험 관리가 용이하지만, 시장의 흐름이 예상과 다를 경우 손실이 커질 수 있고, 파생상품 특성상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되며, 증거금 납부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 상기 내용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할 수 있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요 전략을 예시로 설명한 것이며, 그 외의 투자전략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모니터링 및 리밸런싱

-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투자대상 펀드의 성과 및 위험지표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투자대상 펀드에 대한 성과와 위험 수준, 수익률, 변동성, 주요 종목 분석 등을 평가하여 수시로 리밸런싱을 수행합니다.

※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유동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전략 특성 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지수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교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3) 위험 관리

① 포트폴리오 위험관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원본손실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전략의 일관성, 투자전략의 준수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며,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부분 환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② 피투자펀드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에 대해서는 월간 단위로 신탁재산명세부 및 운용보고서를 수취할 계획입니다. 최초 투자 당시의 현장실사 이후 필요시 수시로 사후 실사 및 운용역 회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피투자펀드 성과, AUM 등은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 하며 이상유무 발생시 즉시 피투자펀드 운용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4)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당사는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위험 단계별 비상조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① 초기국면(1단계): 순자산 대비 환매비율 일간모니터링

② 진행국면(2단계): 순자산 대비 환매비율 일간모니터링. 일정 규모 이상의 대량환매발생시, 환매발생 원인파악 및 추가환매 추이 모니터링

③ 비상국면(3단계): 환매자금 마련을 위한 현금화 과정에서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현금화 과정에서 가격이 현저히 불리하여 잔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것이 예상되는 등, 환매연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부서에 통지. 내부 협의회 또는 위원회 개최하여 환매연기결정, 판매회사 협의, 대고객 안내, 수익자총회 등 의사결정. 관련부서는 협의회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응

※ 상기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전략에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50% 초과하여 분산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자산의 가치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재산이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률(투자수익/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상품 가입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종목위험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의 가치는 해당종목 발행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인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신용 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움직이는 경우 수익이 '0'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상품의 투자제안서 상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비율은 시장상황 등에 따라 실제 투자 시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해외자산에 환헤지 없이 투자하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 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 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나. 특수위험 :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재간접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함에 따라 투자대상인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규약 또는 정관 등을 따르며, 하위 집합투자기구를 직접 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투자대상 하위 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포트폴리오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재간접투자의 특성상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1 영업일 경과 후에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에 반영되므로 투자자가 생각하는 기준가격 반영 시점과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의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레버리지전략(적은 금액으로 투자금액 이상의 높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분산투자 규제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운용규제를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 배제되는 주요 운용규제> - 동일종목 증권 투자제한(10%) - 동일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 투자제한(50%) - 동일 집합투자증권 투자제한(20%)(ETF의 경우 30%) - 각 집합투자기구에 편입하는 동일 집합투자증권 총수 제한(20%)
주요 운용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라 그 세부 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정보접근 제약 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시 의무를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상품 및 운용과 관련된 정보접근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한된 정보접근에 따라 투자의사결정시 제약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시장 가격이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집합투자업자가 공정가치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자산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산정한 공정가치가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환매청구 시점 기준가격 적용일 및 환매대금 지급일 간의 기간이 오랜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매 청구 시점 대비하여 환매대금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 적용펀드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징수되는 성과보수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의 예상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이 실현될 수 있으며 성과보수를 채택하지 않은 집합투자 기구에 투자하는 것보다 실현되는 수익률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롱숏전략 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운용 전략에 따라 증권을 차입할 경우 차입자산의 가치하락을 예상하고 매도 전략을 동시에 구사합니다. 그러나 매도 전략에서 반드시 주식투자위험이 헤지되는 것은 아니며, 차입매도/매수 종목에서 모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차입매도 종목의 규모와 물량이 실제로 확보가 어려울 경우 추가수익을 위한 전략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숏 스퀴즈 위험 (Short Squeeze Risk)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차입매도한 증권의 가격이 상승하면 차입매도 포지션에 손실이 발생하는데, 차입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러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동 증권을 경쟁적으로 매수하거나, 증권을 대여한 거래상대방이 경쟁적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 시장에 품귀현상이 나타나 반환요청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차입매도 포지션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담중개업자 (Prime Broker) 신용 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주로 전담중개업자(Prime Broker)와 자산의 중개,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유동성 공급, 가격평가의 공정성 확인, 신용공여 및 레버리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전담중개업자의 신용위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담중개업자가 담보자산을 대여 또는 재담보 등으로 활용할 경우 전담중개업자의 파산 시 대여 또는 담보자산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회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식관련사채 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관련사채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발행 비용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발행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하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 위주로 발행됩니다. 또한, 주식관련사채는 일반 채권 대비 발행물량이 적고 시장이 협소하여 시장 매각 시 수요가 전혀 없거나 부족하여 매각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매각이 가능하더라도 적정 가격을 받지 못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장내 상장되어도 일반 주식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이는 곧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주기 관련 위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자산의 유동성 제약 등을 이유로 환매 청구 시점부터 환매대금 지급일까지의 환매주기가 오랜 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의 환매주기도 일반적인 투자신탁보다 길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간 내에 투자자금을 유동화하기 원하는 고객이나, 오랜 환매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가치변동 위험을 원치 않는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기 원하는 고객께서는 장기간의 환매주기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지 고려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간접투자에 따른 추가 비용 위험	재간접투자의 특성 상 집합투자규약에 명시된 보수 이외에 재간접 투자에 따른 피투자신탁 보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수 사용료, 매매 비용 등 기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수익스왑(TRS)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시 계약상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지급 지연·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상대방의 신용 위험뿐 아니라 기초자산 발행인의 신용 위험에도 동시에 노출됩니다. 아울러 TRS 구조상 비용, 통화가치 변동, 기초지수와 TRS 평가액 간 괴리 등으로 인해 성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테마 투자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테마 투자 전략 등을 구사할 수 있으며 테마 투자 전략의 특성(비재무적 요소 평가 등) 상 전체 주식시장의 성과와 다를 수 있으며, 투자대상 기업의 업무상 재해 발생, 경영진의 일탈행위

	등 부정적 이슈의 발생으로 가격변동 및 신용 위험 등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대금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적어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및 환매제한 위험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어려워지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매연기의 사유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환매에 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 및 환매 연기 중에 발생한 기타 사유 및 상황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환매가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12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13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 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 산정위험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오류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1000분의 2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격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 위험	국내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세제도 변경 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거주지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환매 여부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과세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 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 자산의 예 : 해외투자 시 이익 및 환차손익, 채권투자 시 이자 수익 등 * 비과세 대상 자산의 예 :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상기 예시는 작성일 현재 기준이며, 조세 관련법령 변경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용프로세스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운용사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파악된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 등급	(1)등급	매우높은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전략에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50% 초과하여 투자하므로,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 6등급 중 **1등급(매우높은 위험)**에 해당되는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설정기간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원본손실 위험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상기 위험 수준을 이해하면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1)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1)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아이엠에셋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상품위험등급분류 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0조에 의한 판매회사별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권유시 상품위험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판매회사의 상품위험등급과 상기 위험등급분류 또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2)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BB+등급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가지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주3)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대출채권 및 이와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주4)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주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 및 수준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채권의 경우 해당국가의 국가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주6) 모자형구조의 자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및 편입비율 등을 기초로 분류하되 설정후 3년이 경과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모집합투자기구와 자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7) 상기 분류에 따라 동일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편입자산의 구체적인 운용내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위험등급을 달리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8)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방법에 따라 별도 분류되며 상기의 위험분류 및 위험 등급 범위는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에 대한 절대적인 분류기준은 아닙니다.

2) 위험등급 분류 기준(수익률 변동성 기준)

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2등급 (높은 위험)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4등급 (보통 위험)	5등급 (낮은 위험)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97.5% VaR	50%초과	50%이하	30%이하	20%이하	10%이하	1%이하

주1) 상기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아이엠에셋자산운용의 내부기준으로 투자위험등급을 분류 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매회사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2) 수익률 변동성 기준이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에 부여되는 위험등급으로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을 곱하여 산출한 97.5% 신뢰수준의 VaR(Value at Risk) 모형을 사용합니다.

주3)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VaR값 OO%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OO%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판매회사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도 가능합니다.

(2) 가입자격

구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며 제한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며 판매회사의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제한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회사의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수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 보험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계정 및 이를 수익자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전용 집합투자증권 라. 5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100억 이상 매입한 법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에서 판매회사의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나) 17시(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13영업일(D+1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14영업일(D+13)**에 관련 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14영업일(D+13)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15영업일(D+14)**에 관련 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의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12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13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부분환매를 결정하는 경우 환매연기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9)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환매가능여부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	-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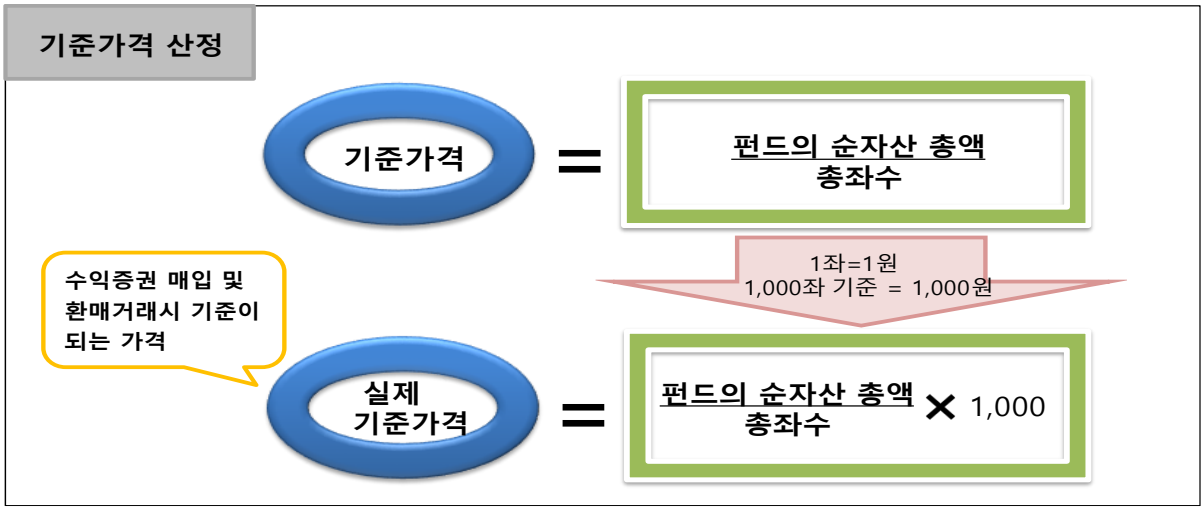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클래스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클래스간 판매회사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클래스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im-fund.com)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시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재산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3)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집합투자재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되,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상장채무증권	상장채무증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한다)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장내파생상품의 경우 계산시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에 의함. 다만, 평가일의 발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의 발표가격에 의하여 평가
장외파생상품	당해 장외파생상품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한 평가방법에 의하거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어음 등 및 양도성예금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주1)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는 등 위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나 세부기준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성과보수가 발생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 지급 예정액은 "미지급재간접성과보수"라는 항목으로 매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합니다. 집합투자규약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재산 중 일반사모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에서 "미지급재간접성과보수"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미지급재간접성과보수의 항목은 투자대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들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0% 이내	-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0%이내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	-	-
부과시기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1) 판매수수료는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동종유형 총 보수)	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거래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0.450	0.450	0.040	0.030	0.970	-	0.970	0.81	1.136	-
수수료선취-온라인(Ae)	0.450	0.220	0.040	0.030	0.740	-	0.740	0.54	0.906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0.450	0.950	0.040	0.030	1.470	-	1.470	1.18	1.636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0.450	0.470	0.040	0.030	0.990	-	0.990	0.73	1.156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0.450	0.030	0.040	0.030	0.550	-	0.550	-	0.716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0.450	0.620	0.040	0.030	1.140	-	1.140	-	1.306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0.450	0.310	0.040	0.030	0.830	-	0.830	-	0.996	-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사유발생시	-	-	-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기타비용 비율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기타비용 : 감사보수, 펀드평가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분담금, 보관대리인 보수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기타비용	-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기타비용 비율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증권거래비용 :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SWAP매매수수료, 대차관련수수료, REPO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매매수수료, 해외파생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증권거래비용	-

※ 금융비용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금융비용	-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5)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6)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7) 합성 총보수·비용은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된 보수와 기타비용에 투자비율에 따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추정치(기타비용 제외)는 약 0.166%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주8) 이 투자신탁은 성과보수를 채택하고 있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상기 보수 및 비용 이외에 성과보수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투자신탁에서는 성과보수가 성과계산기간 초과수익의 10% 또는 20% 이내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High Water Mark 방식에 운용성과의 10% 또는 20% 이내를 성과보수로 계산하여 환매 또는 회계기간 종료, 결산 시 성과보수를 정산합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 천원)

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98	301	407	633	1,282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15	335	459	722	1,474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25	204	286	461	966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42	239	339	551	1,16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51	307	468	808	1,767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68	341	520	896	1,951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01	207	317	549	1,217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18	242	369	639	1,41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56	115	177	308	691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73	150	230	400	89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17	238	364	631	1,392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34	273	416	720	1,582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85	174	266	462	1,029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02	208	319	553	1,225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 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 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종류A 수익증권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1.00%, 종류 Ae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0.50%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며, 판매사별 판매수수료가 차등화되면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 보수 및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

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펀드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인 판매사가 수익자에게 펀드 소득 지급 시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금액"이라 함) 한도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 (지방소득세 포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 (지방소득세 포함)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1월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과세 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 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종합과세 가능)
분리과세한도	1,500만원 (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소득이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2024년 1월 1일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연금외수령시 과세 (통상적인 경우)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관한 자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의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기(2025.10.29 - 2026.04.28)	회계기간미경과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 1기		
	(2026.04.28)		
운용자산	229,725,142,767		
증권	219,568,574,394		
파생상품	0		
부동산/실물자산	0		
현금 및 예치금	10,156,568,373		
기타 운용자산	0		
기타자산	9,917,506		
자산총계	229,735,060,273		
운용부채	0		
기타부채	354,831,242		
부채총계	354,831,242		
원본	156,016,058,774		
수익조정금	-5,933,159,276		
이익잉여금	79,297,329,533		
자본총계	229,380,229,031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기		
	(2025.10.29 - 2026.04.28)		
운용수익	79,298,596,145		
이자수익	105,128,289		
배당수익	0		
매매/평가차익(손)	79,193,467,856		
기타수익	0		
운용비용	1,266,612		
관련회사 보수	0		
매매수수료	0		
기타비용	1,266,612		
당기순이익	79,297,329,533		
매매회전율	0.00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재무정보상의 재무상태표"와 "감사(BSPL)상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주 3) "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감사(BSPL)상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주 4)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2025.10.29 - 2026.04.28)			전기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부동산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기타(REPO,대차,콜 등)						
합계	0	0	0	0	0	0

(주 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 (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0	0	0	0	0	0	32.58

(주 1) 동종유형이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자본시장법 제 229 조에 따른 5 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외)을 의미하며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의 전체의 평균 매매회전율을 의미합니다.

(주2)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근 자료를 활용합니다. (기준일 : 2026.10.01)

나. 재무상태표

[단위:원]

과 목	제1기(2026.04.28)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10,156,568,373				
1. 현금및현금성자산	10,156,568,373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219,568,574,394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219,568,574,394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9,917,506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9,917,506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7.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229,735,060,273				

[단위:원]

과 목	제1기(2026.04.28)					
	금 액		금 액		금 액	
부 채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354,831,242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353,564,630					
4. 수수료미지급금	1,266,612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354,831,242				
자 본						
1. 원 본	156,016,058,774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73,364,170,257					
(발행좌수 당기: 156,016,058,774 좌	이익잉여금	79,297,329,533				
전기: 0 좌	수익조정금	-5,933,159,276				
전전기: 0 좌)						
(기준가격 당기: 1,470.23 원						
전기: 0.00 원						
전전기: 0.00 원)						
자 본 총 계		229,380,229,031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29,735,060,273				

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과 목	제1기(2025.10.29-2026.04.28)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105,128,289				
1. 이 자 수 익	105,128,289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79,193,467,856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61,144,566,366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18,048,901,490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운 용 비 용		1,266,612				
1. 운용수수료						
2. 판매수수료						
3. 수탁수수료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1,266,612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79,297,329,533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508263894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10.29 - 2026.04.28	0	0	1,913	1,924	353	424	1,560	2,294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합니다.

가. 종류형펀드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10.29 - 2026.04.28	0	0	925	928	224	266	701	1,026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합니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10.29 - 2026.04.28	0	0	100	101	14	17	86	125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합니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10.29 - 2026.04.28	0	0	12	12	0	0	12	18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합니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10.29 - 2026.04.28	0	0	18	18	0	0	18	27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합니다.

수수료선취-온라인(A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10.29 - 2026.04.28	0	0	584	587	84	102	500	733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합니다.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10.29 - 2026.04.28	0	0	175	177	20	24	155	227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합니다.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단위:억좌,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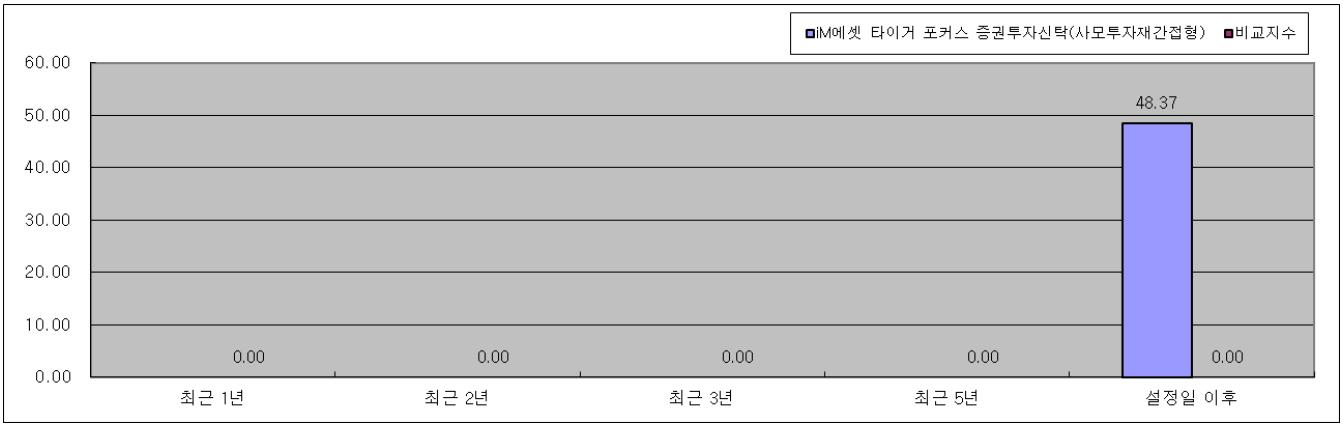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10.29 - 2026.04.28	0	0	100	101	8	10	92	134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5.10.02 ~ 26.10.01	-	-	-	25.10.29 ~ 26.10.01
iM에셋 타이거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48.37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수익률변동성(%)					43.52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46.9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46.2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47.5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46.74
수수료선취-온라인(Ae)					47.31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46.95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47.18

(주 1) 비교지수 : 해당사항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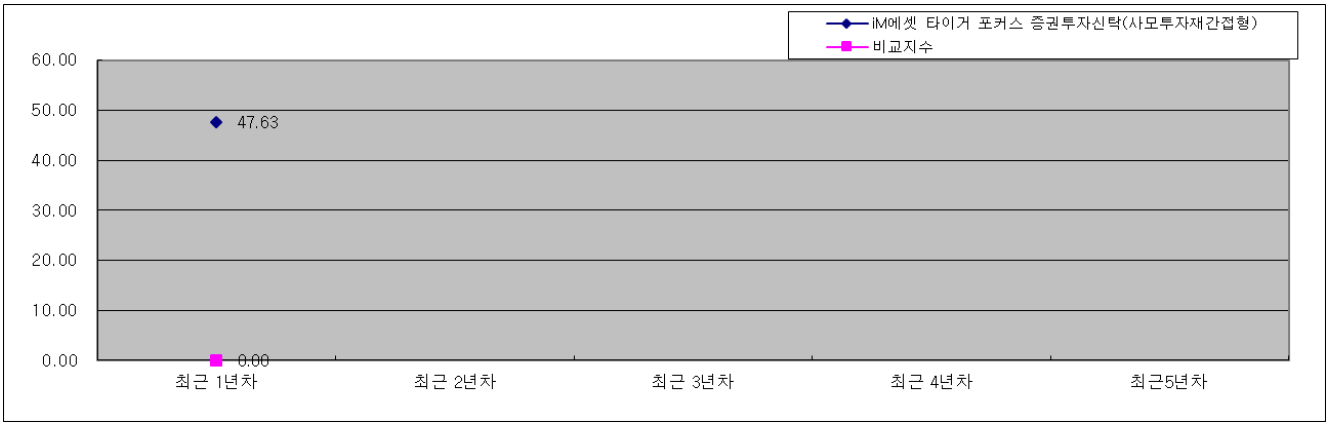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5)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5.10.29 ~ 26.10.01				
iM에셋 타이거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47.63				
비교지수	0.00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46.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45.5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46.8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46.04				
수수료선취-온라인(Ae)	46.6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46.25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46.47				

(주 1) 비교지수 : 해당사항없음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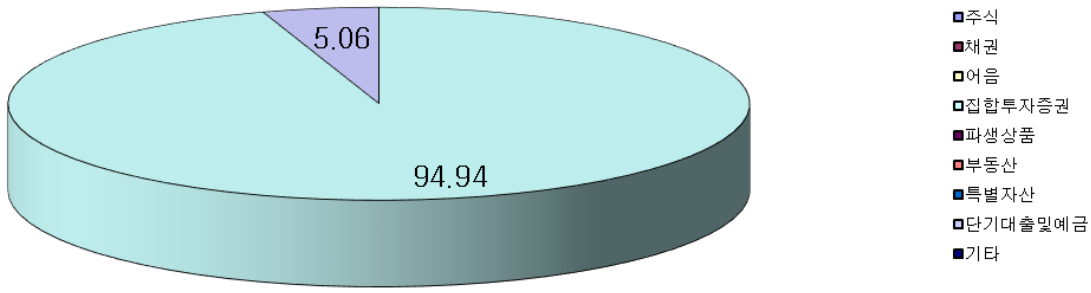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6.07.28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3,062	0	0	0	0	0	163	0	3,225
	(0.00)	(0.00)	(0.00)	(94.94)	(0.00)	(0.00)	(0.00)	(0.00)	(0.00)	(5.06)	(0.00)	(100.00)
합계	0	0	0	3,062	0	0	0	0	0	163	0	3,225
	(0.00)	(0.00)	(0.00)	(94.94)	(0.00)	(0.00)	(0.00)	(0.00)	(0.00)	(5.06)	(0.00)	(100.00)

(주 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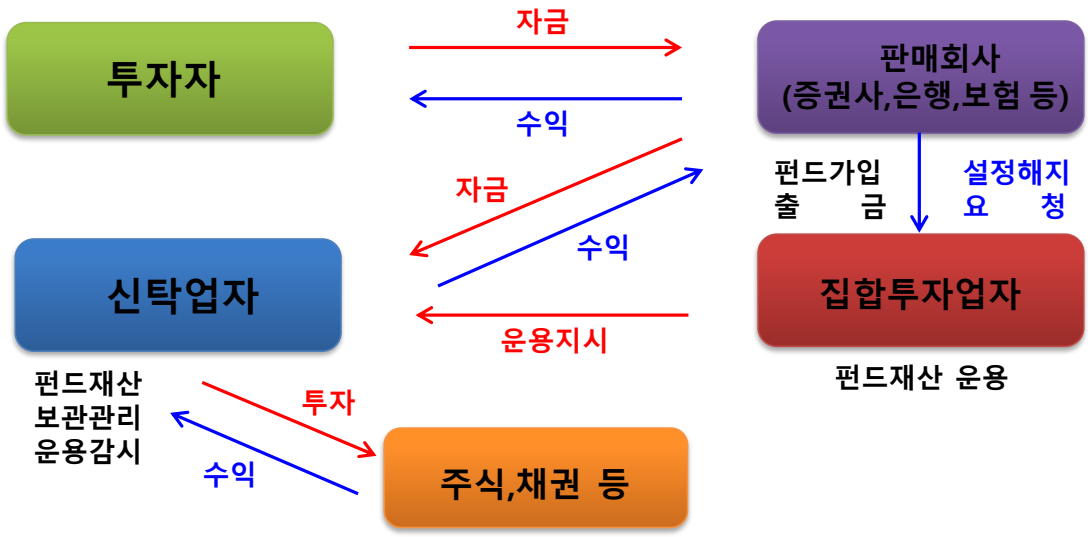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펀드의 운용 구조]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 사 명	주식회사 아이엠에셋자산운용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 14층)	
연 락 처	02-707-4200	
홈페이지	www.im-fund.com	
연 혁	2000년 3월	회사설립(델타투자자문)
	2008년 8월	자산운용사 전환
	2008년 8월	LS자산운용㈜ 상호 변경
	2016년 10월	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DGB자산운용㈜ 사명 변경
	2021년 8월	하이자산운용㈜ 사명 변경
	2021년 10월	블랙록자산운용㈜ 국내공모 집합투자업 사업부문 분할합병
	2024년 06월	㈜아이엠에셋자산운용 사명 변경
자 본 금	191.7억	
주주현황	㈜아이엠금융지주 100%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의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동 투자신탁에서 부담합니다.

(2) 선관의무 등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행한 제비용 및 보수를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채무를 수익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④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채권은 그 집합투자업자의 당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3) 책임

①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및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①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법령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이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이를 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신한펀드파트너스㈜**에 위탁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25.12.31	2024.12.31	계정과목	2025.1.1~ 2025.12.31	2024.1.1~ 2024.12.31
현금및예치금	18,902	20,330	영업수익	25,582	23,832

유가증권	51,116	50,774	영업비용	15,519	13,400
대출채권	229	233	**영업이익**	**10,063**	**10,432**
유형자산	635	1,166	영업외수익	37	24
기타자산	8,428	7,846	영업외비용	31	51
자산총계	**79,310**	**80,350**	경상이익	10,069	10,404
기타부채	8,002	13,176	법인세비용	1,934	1,693
부채총계	**8,002**	**13,176**	**당기순이익**	**8,135**	**8,711**
자본금	19,173	19,173			
자본잉여금	30,968	30,96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이익잉여금	21,167	17,032			
자본총계	**71,308**	**67,173**			

라. 운용자산 규모

[2026.10.01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부동산파생	특별자산및특별자산파생	혼합자산및혼합자산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301	17,977	1,521	0	7,676	6,885	0	1,948	4,134	284	29,216	69,942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미래에셋증권㈜
주 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5길 26(수하동,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연 락 처	1588-6800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①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②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③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④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⑤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수익금, 임대료 등의 수령

⑥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⑦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⑧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⑨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의무 및 책임

(가) 의무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 ·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 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 결과

(나)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28 18,19,20층
연 락 처	02-2168-0400
홈페이지	www.shinhanfundpartners.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의무 및 책임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이지자산평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1층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3층
연락처	02-2251-1300	02-3215-1400	02-398-3900	02-785-1410
홈페이지	www.koreaap.com	www.bond.co.kr	www.nicepni.com	www.egap.co.kr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 평가 및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② 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③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가) 수익자총회의 소집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②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②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③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연기수익자총회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②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② 투자신탁종류의 변경(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③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증권의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① 이 상품의 신탁계약서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①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②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③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④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⑤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②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③ 및 ④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 상기 ③ 및 ④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투자자보호 방안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규모집합투자기구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탁계약서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이 최초설정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의해지 되거나,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탁계약서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방법 이외에도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합병하는 방법 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정리 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가) 영업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법 제88조제2항제4호에 따른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나)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②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종료
③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2) 자산운용보고서

(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

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②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법시행령 제92조제2항에서 정하는 매매회전율

⑤ 그 밖에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다)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③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④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해지 또는 해산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와 같이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③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④ 법 제247조제5항 각호의 사항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⑤-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⑥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⑦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⑨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im-fund.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③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

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로서 설정 이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⑪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①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②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①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②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단위 :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분류	거래금액
성명(상호)	관계			
-	-	-	-	-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단위 :백만원)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거래내용	거래금액	거래사유
-	-	-	-	-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선 정 기 준
선정원칙	1. 회사는 거래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중개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조사분석서비스에 한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회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여 조사분석서비스의 이용대가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3. 회사는 조사분석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조사분석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게 된 편익에 비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1. 채무증권 및 채무증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 중개회사 ① 시장 정보의 정확성 및 적시성 ② 세미나 및 리서치 제공 ③ 발행 등 시황의 유용성 ④ 호가 경쟁력, 호가 대응 신속성 및 체결율 ⑤ 결제 프로세스의 정확성 2. 상장지분증권 및 상장지분증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 중개회사 ① 리서치 제공 능력 ② 매매 실행 능력 ③ PT 및 세미나 ④ 기업 탐방 ⑤ 시장 정보 제공

주1) 각 항목별 평가항목 등은 관련 법규 또는 당사 내부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가. 고유재산 투자금

구 분	주 요 내 용
투자주체	㈜아이엠에셋자산운용
투자목적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신뢰 확보를 위해 투자자・집합투자업자간 집합투자기구 성과 공유장치 마련
투자금액	2억원
투자시기	최초 설정일
투자기간	최초 설정일로부터 3년 이상
투자금 회수계획	- 투자기간 종료 1개월 이전 '투자기간 종료 이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여 투자자에게 통지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 투자기간 경과 후 적정 운용규모 달성 여부 및 운용성과 등을 감안하여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 다만, 투자금이 집합투자기구 원본액의 5%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 - 분할회수는 회차별 1개월 이상 시차를 두며, 1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의 50% 이내로 회수 - 투자금 회수 시에는 회수결과를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주1)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이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① 당연 해지사유 발생

② 소규모 펀드로서 임의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③ 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 및 해산하는 경우

④ 신규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 설정액이 15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 해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 또는 소규모펀드 정리를 위해 모펀드를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⑤ 의무투자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산운용사가 변경되는 경우 펀드를 이전 받는 집합투자업자가 자기공모펀드 투자의무를 승계

주2)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금액은 상기의 의무투자금액 외 추가로 납입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의무투자기간 이전에 시장상황에 따라 회수할 수 있습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어	내 용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은 공고일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그 공고일 전일의 펀드 수익증권 총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계산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말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펀드의 신탁계약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수익자총회	법령 및 신탁계약상의 중요사항을 변경 할 때 펀드의 모든 투자자들이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신탁계약에 따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말합니다.
투자신탁보수	펀드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즉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통상 연 %로 표시되며, 투자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펀드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신탁업자	펀드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라 하며,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	통상 펀드라고 말하며, 대표적으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집합투자업자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증권	펀드에 대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으로서 투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을 말합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이미 설정된 펀드에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코드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펀드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중도환매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펀드에 가입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할 때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로서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다시 펀드재산에 편입됩니다.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다시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